

◆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367호

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의 실효와 도시계획시설(시장)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중소기업청공고 제2001-100(2001.07.03.)호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구역 선정 공고 된 자양종합시장에 대하여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38조제2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승인의 효력이 상실되어 같은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, 위 실효결정으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369호(2006.10.26.)로 고시 된 도시계획시설(시장) 변경(폐지) 결정은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38조제4항에 따라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므로 도시계획시설(시장) 결정사항 고시 및 「토지이용 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.

2020년 9월 3일
서울특별시

1.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 실효 조서

가. 정비사업의 명칭 : 자양종합시장정비사업

나. 사업시행자 : 자양종합시장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정무곤

다. 시장정비사업구역 명칭.위치 및 면적

구역명칭	위 치	면적 (㎡)	비 고
자양종합시장 정비구역	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602번지	3,344.9㎡	

마 당초 토지이용 계획

구분	명칭	면적 (㎡)	구성비(%)	비 고
총 계		3,344.9	100.0	
대지(획지)		3,344.9	100.0	

바. 당초 건축시설 계획

구분	대지면적(㎡)	층수(지상/지하)	연면적(㎡)	용 도	비고
신규	3,344.9	10/4	23,329.54	공동주택, 판매시설, 주차장	

사. 실효 사유

구분	구역명칭	위 치	실효 사 유	비 고
실효	자양종합시장 정비구역	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602번지	사업추진계획 승인 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유효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지못함	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38조제2항

2.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조서

가. 결정취지

-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38조제2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이 실효되면 제2006-369(2006.10.26.)로 고시된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시장) 변경결정은 같은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므로 도시계획시설(시장)을 결정하고 제2종일반주거지역 층수 완화에 관한 사항으로 환원코자함

나. 도시계획시설(시장) 결정 조서

구분	시설명	위 치	면적(㎡)			최 초 결정일	비고
			기 정	변 경	변 경 후		
신설	시장	자양동 602번지	-	증) 3,344.9	3,344.9	'72.3.28	자양종합시장

다.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 실효에 따른 제2종일반주거지역 층수완화결정(변경)조서

위 치	면적(㎡)	층수완화 내용	비고
광진구 자양동 602	3,344.9	제2종일반주거지역(10층이하→7층이하)	

3. 관계도면 : 따로붙임

가.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해 서울특별시 도시활성화과(☎02-2133-4646)와 광진구 도시계획과(☎02-450-7687)에 관련 도서를 비치 및 열람하고 있습니다.

나. 첨부된 지형도면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, 그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4. 기타사항

가. 위 시장에 대하여는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45조 및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례조치는 취소된 것으로 봄.

[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 실효 및 도시계획시설(시장)결정 지형도면]

